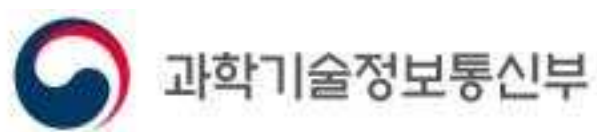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안 내 서

2020. 2.



목 차

I . 사업개요	1
1. 목적	1
2. 지원방향	1
3. 초빙대상	1
4. 활용과제 및 분야	2
5. 주관연구기관	2
6. 활용방법	2
7. 지원기간 및 내용	3
8. 선정평가	7
9. 사업 추진 절차	9
II . 사업관리	10
1. 사업관리절차	10
2. 사업관리 주요내용	10
3. 주체별 역할과 책임	11
4. 해외고급과학자 관리 등	12
5. 사업 준수사항	13
6. 연구결과 사후 관리	13
III . 사업신청	14
1. 신청방법	14
2. 제출서류	14
3. 신청자격	15
4. 문의처	15
5. 추진일정	16

I. 사업개요

1 | 목 적

- 중견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참여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
- 국내 연구기관·대학·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 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산학연의 과학기술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

2 | 지원방향

- 우수한 해외과학자와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 부족한 연구인력 중점보완을 통한 산·학·연의 과학기술수준 향상
- 국내 인력과 해외 고급과학자가 교류하며 개방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

3 | 초빙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자, (기업부설(연))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신청 시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 기존사업 수행과제(동일 연구책임자·해외고급과학자)의 재신청 가능
 - ※ 과제 지원 후 3년 이내 재신청 가능, 3회차 까지 최장 5년 지원 가능 (유형1.2 혼합가능)
 - ※ (KRF) 평가결과 S,A등급 우수자의 경우, 차년도까지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P) 신청 자격 부여

4 | 활용과제 및 분야

- 활용과제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전략적 추진과제로서, 해외고급과학두뇌 활용이 필요한 과제
- 활용분야 : 해외 중견연구자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과학기술 모든 분야
 - 우대분야 : 8대 선도사업·3대 전략투자·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과제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산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전략투자)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5 | 주관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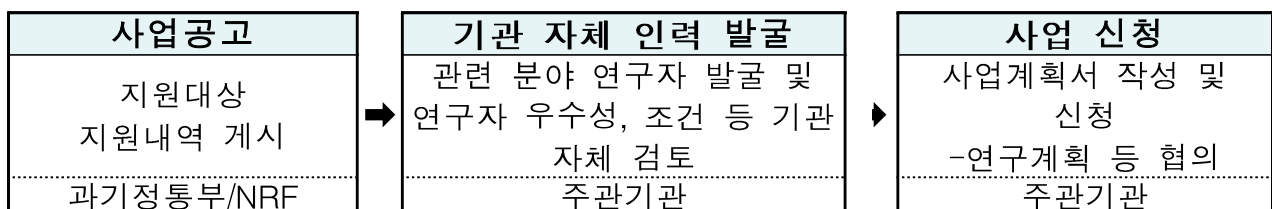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 활용방법

- 국내 연구기관이 초빙대상 인력을 직접 발굴하여 과제 신청
 - 주관기관이 해외인력 유치 필요성, 해외초빙과학자 역량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
 - 해외초빙과학자 국내 연구활동 및 행정 등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추진 절차>



7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3년(2+1)**

*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지원가능

** 유형2의 경우 2년간의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단계평가) 추가 1년 지원 여부 결정

※ 유형1·2 합하여 최장 5년까지 3회 연속 수혜 가능

※ 선정통보 후 4개월 이내 입국이 원칙(부득이한 경우 관련 사유서를 제출하여 12월까지 입국하여야 함)

- (유형1 연구기간)

구분	연구기간(예시)	비고
6개월	2020.5.1.~2020.10.31.	선정통보 후 4개월내 입국
7개월	2020.5.1.~2020.11.30.	
⋮	⋮	
12개월	2020.6.1.~2021.5.31.	

- (유형2 연구기간)

년도	연구기간	비고
1차년도	2020.3.1.~2020.12.31. (최대 10개월)	선정통보 후 4개월내 입국
2차년도	2021.1.1.~2021.12.31. (12개월)	단계평가 실시(하반기)
3차년도	2022.1.1.~2022.12.31. (12개월)	추가지원 년도

○ 지원내용 : 해외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다음 페이지 비목별 지원내역 및 산정기준에 따름

< BP사업 지원 내역>

유형	지원기간	인건비	유치경비
【유형1】 단기 지원	6~12개월 ※ 산업체: 3~12개월 지원 가능	해외 고급과학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 원/월~최대 25백만 원/월) ※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 지원 ※ 정규직의 경우 ‘인건비’ 외 비목(연구활동 장려 금 등)으로 지급 가능	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국내외 여비, 자녀학비(누리과정 등), 전담지원인력 등 ※ 유형의 경우, 2차년부터 체재비(1,200만원/년· 인) 실비제공 가능
【유형2】 장기 지원	3년(2+1) ※ 유형1·2 합하여 최장 5년까지 3회 연속 수혜 가능		

○ 지원 방식

- 사업비 교부 :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개별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교부(해외고급과학자 입국 후 주관연구기관은 여권사본과 함께 입국보고서를 제출)
- 사업비 집행 : 개별협약 체결 후, 주관연구기관은 해외고급과학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유치경비는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지급

① 인건비 : 월 5,000~25,000천원

- 해외고급과학자의 보수 등을 반영한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보수 산정기준>

- 초빙당시의 소속기관 연봉액을 기준으로 월 5백만원 ~ 25백만원을 지원

※ 최대 3억원/년 지원, 4대보험(개인, 기관 부담금), 원천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

※ 제출된 연봉 관련 서류(한국어 또는 영어*)는 초빙연구자의 월 급여, 4대 보험(개인, 기관부담금), 원천세,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원소속기관의 월 급여 * 당해 연구기간(연구 개월 수) = 당해 연도 급여액으로 산정

(* 인건비 산정 시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2019.12.31.일자 기준 (USD 1,157,80))

※ 해외고급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해외 원 소속기관 기준)의 70%, 3억원/년까지 지원

※ 정규직으로 유치 시 본 사업 연구과제에 '정규직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의 [별표3] 인건비 제4호 마목에 따라 정규직 인건비 현금계상
- 정규직의 경우 '인건비' 외 비목(연구활동 장려금 등(직접비))으로 지급 가능

② 유치경비(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국내외 여비, 자녀학비(누리과정 등), 전담지원인력 등)

※ 항공료·보험료·이사비 등 유치경비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가능하며, 한도 초과금액은 자비 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담

- 항공료 및 보험료 : 아래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비정산

(단위 : 천원)

지 역	항공료+보험료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일본, 중국, 대만	3,400	5,300	6,200
동남아시아	3,600	5,700	6,600
인도, 서아시아, 중동	4,100	6,700	7,600
북미(서부), 호주, 유럽, 러시아	5,100	8,700	9,600
북미(중·동부, 캐나다)	5,600	9,700	10,600
중남미, 아프리카	6,600	11,700	12,600

※ 항공료 : 해외고급과학자 본인의 최단 직항 왕복 항공료(국내여비 포함) 지원(1회)

(12개월 이상 활용과제에 한해 동반가족 1인 왕복항공료(1회) 지원 가능)

※ 상해·질병보험료 : 시중 보험사의 상해·사망·후유장애, 질병치료비 보장을 포함하는 순수보장형 보험의 보험료(실비지급)

- 이사비(이주비) : 아래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비정산

(단위 : 천원)

지 역	지 원 액
일본, 중국, 대만	500
동남아시아	600
인도, 서아시아, 중동	800
북미(서부), 호주, 유럽, 러시아	1,100
북미(중·동부, 캐나다),	1,300
중남미, 아프리카	1,600

※ 이사비는 12개월 이상인 해외고급과학자에 한하여 입출국시 지원, 재신청 국내 체류 연구자 1회 지원(실비 지급)

- 자녀학비(누리과정 등) 및 전담지원인력(간접비포함) : 연간 5,000천원 이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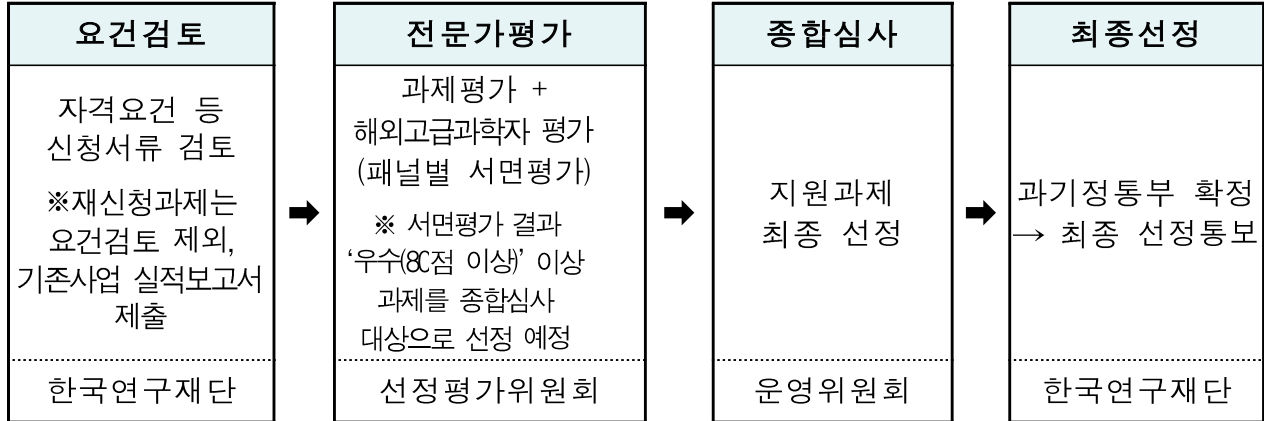
※ 해외고급과학자의 자녀학비 우선 지원 후 전담지원인력 및 간접비 지원

※ 해외고급과학자의 직계가족 중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학비 및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의 보육비 지원(누리과정)

※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교육비 지원(외국인 학교(사립)의 경우: 입학비(등록비), 연간 학비(교육비))

- 체재비 : 유형2의 경우, 2차년부터 해외고급과학자의 체재비(12,000천원/년·인) 실비 제공 가능, 유형1의 해외고급과학자의 체재비는 주관연구기관(활용기관)에서 제공을 원칙으로 함
 - ※ 해외고급과학자 본인명의 월세(관리비 제외, 실비 지원)
 - ※ 전세 및 자가에 대해서도 최대 연 1,200만원 수준에서 본인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차지원(실비 지원)
- 국내외여비 및 학회참가비: 항공료 및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국내여비 및 학회참가비 예산편성 가능
 - ※ 다년과제의 경우 유치경비 중 국내외여비(학회참가비 포함) 및 보험료 5,000천원 지원

가. 평가절차



- 요건심사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해외고급과학자 자격요건 검토
- 전문가 평가 : 해당분야 전문가의 패널별 토론평가를 통해 과제별 평균 점수 80점 이상 과제 종합심사 추천과제 선정(절대평가)
- 종합심사 :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운영위원회 종합심사로 지원과제 선정
 - ※ 국적 다양화를 위해 1국(한국 제외)에서 각 선발시기별 총 선정자의 20% 초과 제한 가능
 - ※ 국제 한인 연구네트워크 구축·유치 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한인·교포 최소 선정쿼터 (30%) 적용
 - ※ (BP) 최종평가결과 S등급 우수자(국내PI·해외연구자)의 경우, 차년도까지 동사업 신청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 ※ 선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유형1·2 공통) 신규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유치기관 평가 (5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필요성	20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역량 및 지원체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활용역량(연구장비·시설, 연구비 등)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연구지원 계획(연구공간, 연구장비, 연구비, 행정지원) 및 지원체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정주지원 계획(주거, 생활, 가족 등) 및 지원체계	20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후속과제 진행 등	10
해외고급과학자 평가 (50)	해외고급과학자의 역할 및 역량	- 해외고급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 해외고급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수행역량 보유여부 (해외고급과학자의 연구경력, 최근 5년간 대표 연구·사업화 실적(SCI급 논문·특허 등)의 우수성 등) -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달성가능성	40
	기대효과 및 직무수행 의지	-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동기 및 연구수행 의지	10
합계			100

- (유형1) 재신청 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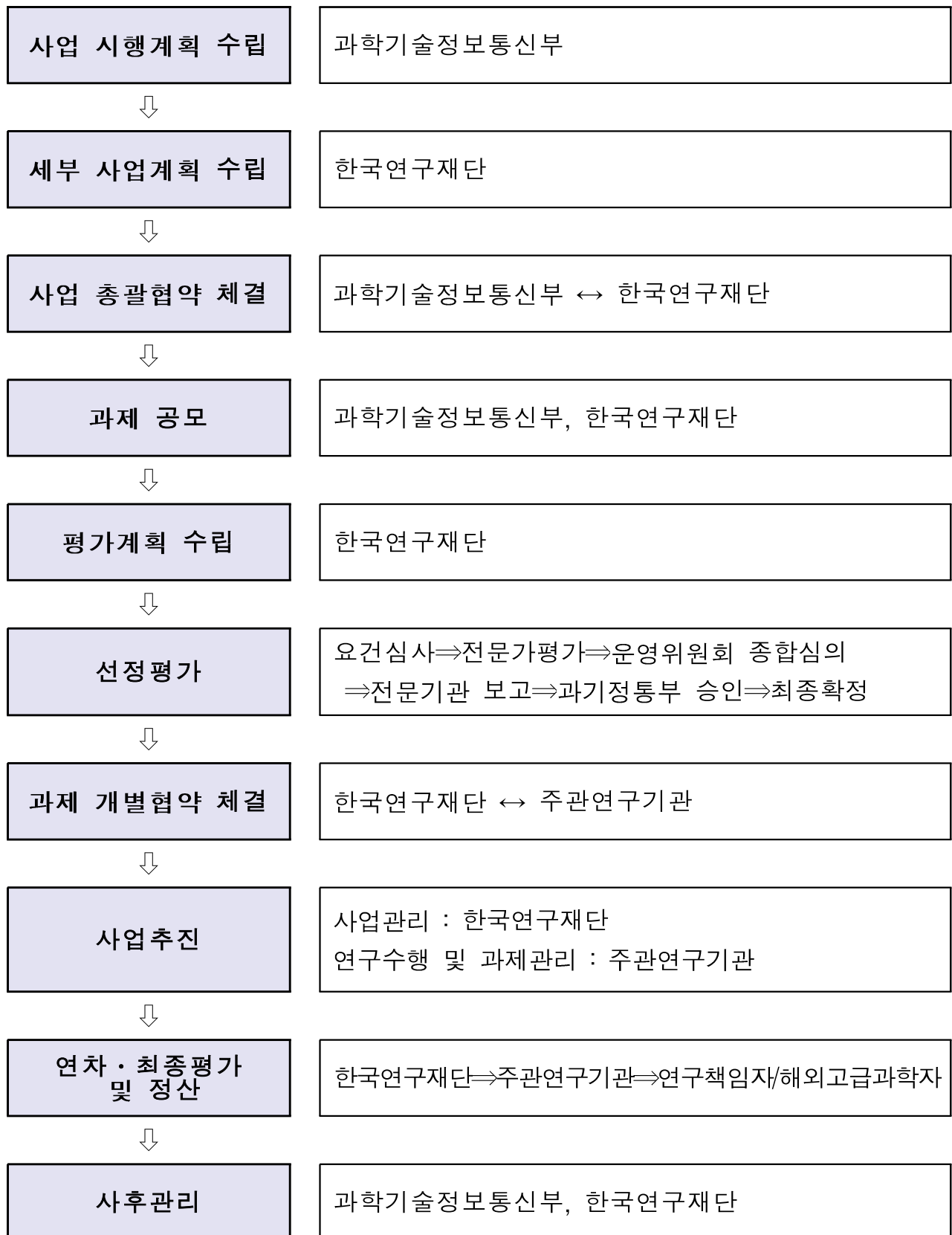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기존과제 연구실적 (70)	계획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연구계획서상 목표 달성 여부 - 연구결과 및 성과의 활용 여부	25
	연구수행 내용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도	- 논문, 특허, 기술개발 등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연구수행 방법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적절성, 해외고급과학자의 성실성, 활용·협력 여부 등	30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적절성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지원(연구 및 생활 지원 등) 적절성	15
연장 연구계획 (30)	향후 연구계획 및 운영방향	- 연장 연구계획 및 내용, 운영방향 - 기존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등	15
	연구목표 및 방법	- 연장 연구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적절성·구체성 - 예산 집행 및 편성의 적정성 등	10
	연구수행 의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해외고급과학자의 연구수행 의지	5
합계			100

※ 기존 지원과제 재신청의 경우 신규 신청과제와 별도 평가지표로 심사 진행

※ 최종평가결과 우수자(국내·해외연구자)의 경우, 차년도까지 동사업 신청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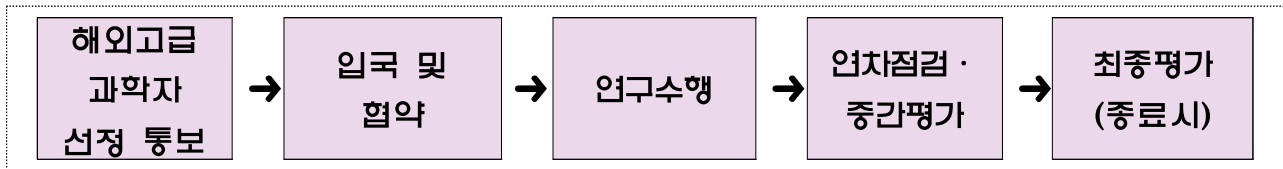
9

사업 추진 절차



Ⅱ. 사업관리

1 사업관리 절차



2 사업관리 주요내용

- (유치요건 협의) 선정 통보 후 유치기관-해외고급과학자 간 유치요건 최종 협의 후 협의결과 제출(유치기관→연구재단)
 - ※ 선정통보후 별도 안내
-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해외고급과학자 입국 후 해외고급과학자와 주관기관 간 계약체결 및 협약 체결
 - ※ 협약 체결시 협약용 계획서, 해외고급과학자-유치기관 계약서, 해외고급과학자 입국보고서(여권 등), 초빙과학자 서약서 등 첨부
- (사업비 지급 및 연구착수) 협약 체결 후 전문기관이 사업비 일괄 지급 및 연구착수
 - ※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2020년 12월 까지) 입국 및 연구착수(기한 내 미입국 시 선정 취소 가능)
-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 사업지침 및 연구계획서 등에 따라 연구수행
 - ※ 계획대비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 전문기관 보고 및 승인 필요

- (연차점검 · 중간평가) 연도별 연차실적·계획서 등에 해외연구자의 연구성과 및 점검 내역을 주관기관이 제시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주관기관의 해외인재 활용 책임성 강화(유형 2과제)
 - ※ 자체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
 - ※ 과제개시 연도의 실제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당해 연차점검 생략
 - ※ 중간(단계)평가는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중간(단계)평가 실시(전문기관)
- (연구비 정산)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최종평가) 지원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실시(전문기관)

3 주체별 역할과 책임

- 사업관리 주체별 아래의 역할과 책임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 해외고급과학자의 연구지원(연구 공간, 연구 장비, 연구비, 행정지원) 및 한국 생활 정주지원(주거, 생활, 가족 등)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이 반드시 제공

구분	역할 및 책임
주관연구기관	·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 - 사업포기 및 협약해약 등 발생 시 사업비 회수·반납 등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및 성과 등 전반적 사항 총괄관리 - 해외고급과학자 숙소 제공 등 정주여건 지원(주거, 생활 등) · 과제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연구책임자	· 해외고급과학자의 근태·복무 관리, 진도·성과관리 · 해외고급과학자의 연구비 관리, 연구수행 전반 지도 및 관리 - 연구공간, 연구장비, 연구비, 행정지원 · 국내인력과의 공동연구 체계 및 역량 개발 지원
전문기관	·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홍보 및 정책지원 - 최종평가 및 인력/성과의 사후 관리 등

4 | 해외고급과학자 관리 등

- (근무) 해외고급과학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전일 근무하며 연구를 수행
- (강의 및 연구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의 승인하에 대학 강의(1과목 이내) 또는 Brain Pool사업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타 R&D과제 참여 및 수행 가능(참여율 30% 이내)
- (유급휴가) 최대 연 20일 이내(협약 연구기간 12개월 기준)
 - ※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근무일(휴일, 기관휴무일 제외)만 계산하며, 허용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인건비를 반납
 - ※ 지원 중단시 유급휴가 일수는 최종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
- (해외출장) 지원기간의 10% 이내에서 가능
 - 해외출장 누적일수가 지원기간의 10% 초과 또는 1회에 10일 초과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해당 주관연구기관은 승인 내역 및 출장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해외 출장 종료 후 출장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제출(출장 종료 후 7일 이내)
 - ※ 해외출장에 대해 공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회수
- (연구수행) 연구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연구수행에 공백에 발생하는 경우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회수 가능
 - 선정완료 후 협약포기자(국내 PI, 해외인재)에 대해 동사업 3년 참여제한 등 패널티 부과 가능

5 사업 준수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원 중단 또는 협약 해약 가능
 - 국가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해외고급과학자가 입국 및 과제 연구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장 또는 해외고급과학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해외고급과학자가 주관연구기관 또는 타 기관에 취업한 경우
 - 출산, 병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해외고급과학자가 1개월 이상 연구수행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협약의 해지 사유 발생 시(현장점검 결과 등)
- 협약 해약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 회수 의무가 있음
 - ※ 주관연구기관 또는 해외고급과학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지원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 가능

6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사업으로부터 얻은 지적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의 권리는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의 규정 혹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 연구성과 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해외고급과학자초빙(BP, Brain Pool)의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Brain Pool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grant number)

Ⅲ. 사업신청

1 신청 방법

-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고급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ernd.nrf.re.kr)

☞【사업분류】교육인력양성사업(H1)-국제연구인력교류(H1D3)-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H1D3A2)

※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은 ‘[별첨]ernd 접수 메뉴얼’ 참조

2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

과제 선정 전 제출 자료
- 사업신청서 1부 ① 붙임1-1(유형1·2_신규신청용), ② 붙임1-2(유형1·2_재신청용) 양식 중 택 1 ※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신청서 양식 ①, ②중 선택하여 작성·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협약서 1부

과제 선정 후 제출 자료(선정과제에 한함)
- 해외고급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국내체류 중인 재신청 과제의 경우는 직전 국내 소속기관에서의 급여명세서 제출) - 해외고급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 - 해외고급과학자의 영문 초빙 수락서

3

신청자격

구분	자 격
주관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 이상인 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업 운영기간 동안 재직이 보장되고 과제수행에 전념이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
해외고급과학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연구자 ※ 한국 국적의 해외고급과학자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건강상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만 75세 이상* 연구자 초빙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국내 미도입 기술분야, 시급성이 인정되는 분야, 해당 분야에서 석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로 제한 * 적용 기준 : 1944.12.31. 이전 출생자

4

문의처

【 문 의 처 】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국문) 02-3460-5624, 5629 / E-mail : yokang@nrf.re.kr ☎ (영문) 044-866-6381 / E-mail : jenny@krf-help.net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콜센터) ☎ 1544-6118

5

추진 일정

일 정	추진내용
'20. 1. 20.(월)	2020년도 사업 공고(1~8월까지)
'20. 2. 28.(금)	1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0. 3월 중	1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0. 4. 24.(금)	2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0. 5월 중	2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0. 6. 26.(금)	3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0. 7월 중	3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0. 8. 28.(금)	4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0. 9월 중	4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동 사업안내서는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변경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은 사업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따름